

2004년도
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사업 신청요강

2004. 2.

한 국 학 술 진 흥 재 단

개 선 사 항

구분	2003년	2004년	비고
신청방법	○ 온라인 신청 - 연구자가 재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신청 후 연구계획서 및 기타서류를 제출	○ 온라인 신청 및 파일 탑재 - 연구자가 재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과 연구계획서 동시 탑재	
사업추진 일정	○ 안내: 3월 ○ 신청접수: 6월 ※ 연구개시일: 2003.9.1	○ 안내: 2월 ○ 신청접수: 5월 ※ 연구개시일: 2004.9.1	
서류제출	○ 소속기관장이 수합하여 일괄신청 - 강의 및 연구계획서 1부 - 강의 및 연구계획 추천서 (학과장) 1부 - 강의경력증명서 1부(최근 2년간) - 미취업확인서 1부 - 각종 보험가입(미가입) 확인서 1부	○ 소속기관 연구지원업무 담당부서에 제출 - 강의 및 연구계획서 1부 - 강의 및 연구계획 추천서 (학과장) 1부 - 미취업확인서 1부 - 각종 보험가입(미가입) 확인서 1부	

차 례

I. 사업목적	1
II. 사업내용	1
1. 사업규모	
2. 지원방향	
3. 지원분야 대상 및 조건	
4. 지원규모 및 기간	
III. 공모 및 신청	2
1. 공모방법	
2. 신청방법	
3. 신청자격	
4. 신청 및 참여 제한	
IV. 심사 및 선정	5
1. 심사절차	
2. 심사방법 및 내용	
V. 지원금 지급 및 관리	7
1. 지급방법	
2. 지급시기	
3. 지원비 사용	
4. 지원비 관리	
VI. 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	8
1. 보고서 제출	
2. 연구결과 사후관리	
3. 연구성과 Follow-up 시스템	
VII. 간접연구비지원	10
VIII. 행정사항	10

※ 불임 : 2004년 신청서식

I. 사업목적

학문의 종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수요가 적은 학문분야의 연구자 양성 및 대학 교육내용의 균형성 유지

II. 사업내용

1. 사업규모 : 21억원

2. 지원방향

- 학문의 종다양성 보호와 학문간의 균형발전 도모
 - 인문사회분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자연과학분야는 인문사회분야와 학제적인 경우를 우선 지원
- 여성 신청자 우대 (선정인원의 20% 내외)

3. 지원분야 대상 및 조건

가. 지원분야 : 인문사회분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자연과학분야는 인문사회와 학제적인 경우를 우선함

- 학문적으로는 가치가 있어 개설되어야 하나, 수요가 적어 전임교원의 채용이 곤란한 분야
- 대학의 교과 과정상 정규과목으로 개설되어 있거나 개설 예정인 기초학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분야

나. 지원대상 : 보호학문분야에 적합한 전문학자 (신청자격 참조)

※ 편람, 사전편찬, 교재개발, 번역, 전람회,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
다. 지원조건

- 강의부담금 전액을 지원비에 포함하여 지급함. (기관에서는 선정된 강좌의 강의료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됨)
- 규정된 수 이하의 학생이 강의 신청을 할 경우에도 폐강해서는 안됨

4. 지원규모 및 기간

가. 지원규모 : 1인당 연간 2,460만원

※ 강의지원비 연 2,160만원(매월 균등지급), 연구활동비 100만원, 연구기관 지원비 200만원을 연구기관에 지급 (단, 기관지원비는 연구자가 의료보험, 국민연금 등 각종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만 인정됨)

나. 지원기간 : 1년

Ⅲ. 공모 및 신청

1. 공모방법

- 대학 총(학)장 및 기관장을 통하여 공고(e-mail)
- 재단 홈페이지(<http://www.krf.or.kr>)를 통하여 공고
- ※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요강 및 신청양식 제공

2.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(재단 홈페이지 www.krf.or.kr에 접속)

가. 온라인 신청기간 : 2004. 4. 14. (수) - 5. 13. (목) 18:00

나. 온라인 신청 전

- 연구계획 연구지원 시스템의 전면 디지털화로 온라인 신청시 연구계획서 작성화일을 동시에 탑재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온라인 신청 전에 “연구계획서(훈글 또는 MS워드)”를 작성한 후 온라인 신청
- ※ 온라인 신청개시 3일 전에 신청 입력화면을 확인할 수 있음

※ 신청자는 **온라인 신청 전** 재단 홈페이지에서 연구과제 신청자격(결과보고 미제출 등) 여부확인 후 【학술연구자정보】에서 개인정보 (연구업적 포함)를 직접 입력 또는 수정하고 이를 확인한 후 온라인 신청하여야 함

※ 학술연구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불가

다. 온라인 신청

- 온라인 신청은 “연구계획서”파일 탑재 완료 후 “접수번호”까지 부여받았을 경우에 모든 과정이 완료된 것임
- ※ 온라인 신청 기간 중에는 온라인 신청 입력 사항 수정 및 연구계획서 파일의 교

체가 가능하나, 온라인 신청기간 이후에는 동 제반사항에 대한 수정이 불가하오니 온라인 신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○ 탑재파일

-강의 및 연구계획서(A4용지 15매 내외 분량으로 작성) <양식 4>

라. 제출서류

○ 소속기관 연구지원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함

-강의 및 연구계획서 1부 (온라인 파일탑재 후)

-강의(1, 2학기 강의배정 포함) 및 연구계획 추천서 : 학과장 추천 <양식 1>

-미취업 확인서 <양식 2>

-각종 보험 가입(미가입) 확인서 (선정될 경우 각종 보험 가입여부를 기관에서 확인) <양식 3>

○ 학과장(1, 2학기 강의배정 포함)의 추천을 받아야 함

※ 학과장은 추천시 신청자의 취업 상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파악하여 강의 및 연구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만 추천하여야 함

※ 1년간 2개 이상의 대학에 출강할 경우 신청자가 1개 대학을 지정하여 신청

마. 온라인 신청 후

○ 연구책임자 :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후 온라인 신청내용 및 연구계획서를 출력하여 연구지원업무 담당부서에 제출

○ 신청기관 연구지원업무 담당부서

-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현황, 신청자격 적격여부,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온라인 신청내용 및 연구계획을 확인하여야 하며, 확인이 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하지 않음

-최종 신청과제를 5월 17일 18:00까지 확정입력하고 신청과제 목록을 출력하여 보관

-신청자로부터 제출 받은 연구계획서, 기타 서류 및 신청 명단은 재단으로 별도 송부하지 않고 보관함

3. 신청자격

○ 보호학문분야의 전문학자로 신청하는 해당대학의 2004년 2학기 강의를 확정된 자

※ 정규직 취업자 제외 (학과장은 추천시 신청자의 취업상태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강의 및 연구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만 추천하여야 함)

※ 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사업 기 수혜자도 신청가능 함

※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대우교수, 겸임교수, 객원교수 등은 제외

4. 신청 및 참여 제한

가. 신청 제한

-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정규직에 취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함
-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(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포함)를 지원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당초 최종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
- 학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
-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(단, 1999년 이전 지원과제는 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)
- 재단의 2004년도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의 강의과건 수혜자 중 연구기간(지원기간)이 중복되지 않는 자

나. 연구 참여 제한

- 본 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사업 내에서는 1인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
 -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나,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. 단,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계속과제 중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4.12.31 이후인 과제는 연간 연구참여 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며,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 등을 수행한 경우는 연구참여 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음
- ※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. 단,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4.12.31 이전인 과제는 연구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나, 기 수행중인 과제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 지급은 중지하고 신규 지원 사업 연구비에서 지원함

- ※ 교육인적자원부 두뇌한국(BK)21사업 참여자는 재단 연구지원사업에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음
(BK21 사업의 지역대학육성분야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1인이 2과제까지 참여가능)
- ※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연구비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가 신청과제에 포함된 경우에는 최종선정에서 제외함

IV. 심사 및 선정

1. 심사절차

단 계 별	심 사 내 용	
1 단계	요건심사	신청자격 심사
2 단계	전공심사	보호학문분야의 적격 여부 및 강의·연구계획서
3 단계	종합심의	최종선정

2. 심사방법 및 내용

가. 1단계 심사 : 요건심사

- 심사방법 :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심사
- 심사내용 :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및 요건 저촉여부 등

나. 2단계 심사 : 전공심사

- 심사방법 : 온라인 패널심사
- 패널구성방법 : 재단의 심사자와 심사자 pool을 중심으로 세분분야별 패널을 구성하며,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충원함
- ※ 심사자에게 공정한 심사의 책무 등을 서약 받아 심사자의 책임성 고취
- 심사내용
 - 강의내용(50점) : 강의개설의 필요성, 강의계획서 평가
 - 연구주제(25점) : 독창성, 학문발전의 공헌도
 - 연구내용 및 실현가능성(25점): 연구내용 및 방법, 선행연구

○ 심사항목 및 배점

【적격심사】

구분	심사항목	적격	부적격	비고
보호학문의 적합성	보호학문분야 지원목적에 합당한 분야인가 심사			

※ 보호학문의 적격 여부를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결정하되,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패널은 전문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결정함

【연구자의 연구계획서 심사】

구분	심사항목	측정지표	심사내용
강의내용	강의개설의 필요성	희귀분야 강좌개설 필요성	○ 희귀분야로서 강좌 개설의 필요성이 있는가
	강의계획서 평가	강의실적	○ 강의역량이 축적되어 있는가
		강의계획 및 연구계획과의 연관성	○ 강의와 연구가 연관되어 있는가
연구주제	독창성	주제의 창의성 및 독자성	○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주제인가 ○ 고유한 지식체계를 창출하는가
		방법의 창의성 및 독자성	○ 독창적인 연구방법론을 모색하는가 ○ 새로운 자료수집을 시도하는가
	학문발전 공헌도	학문적 가치	○ 연구주제의 중요성이 큰가 ○ 새로운 지식 또는 이해의 지평을 창출하는가
		학문의 파급효과	○ 많은 후속 연구를 파생할 수 있는가 ○ 학문적 담론을 활성화하는가
		교육과의 연관성	○ 연구 결과가 교육내용으로서 중요성이 높은가
	연구내용 및 방법	연구내용 및 방법의 타당성	○ 연구 내용 및 방법은 적절한가
연구내용 및 실현 가능성	선행연구	선행연구의 검토	○ 중요한 선행연구들이 빠짐없이 검토되었는가 ○ 인용 및 참고문헌은 적절한가

※ 최종점수의 산출은 표준점수제에 의함

다. 3단계 심사 : 종합심의

- 심사내용
 - 예산 배정 확정
 - 연구비 분야별 배정
 - 세부분야별 배정 : 기본배정 10%, 추세변동(당해년도 신청건수 대비) 40%, 심사조정금액대비 40%, 정책적 고려 10%

V. 지원비 지급 및 관리

1. 지급방법

-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지급

2. 지급시기

- 협약 체결 후 일괄 지급

3. 지원비 사용

- 연구자의 소속기관은 과제별 협약 체결 후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함
- 연구활동비는 강의와 연구에 필요한 경비로 일괄 지급함
- 지원비 담당부서는 연구자에게 월 단위로 강의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함

4. 지원비 관리

- 지원비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장이 중앙관리하여야 함
- 단,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나, 연구중단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비의 회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
 - 지원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
 - 지원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 -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지원비를 지급 받았을 때
 - 강의 및 연구진행 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
 - 강의 및 연구기간 중 전임교원으로 임용되거나 취업하였을 때 (잔액회수)
 - 해당 대학의 사정 등으로 더 이상 강의를 수행할 수 없을 때

-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(표절 등)로 하였을 때
-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과제 관리지침(연구계획서 포함)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

VI. 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

1. 보고서 제출

가. 중간보고서

- 제출시기 :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
- 제출자료
 - 2004년 2학기 강의결과보고서
 - 2005년 1학기 강의개설 확인서
 - 연구진행상황보고서

나. 결과보고서

- 제출시기 :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
- 제출자료
 - 연구결과개요보고서
 - 연구결과 요약문(국·영문)
 - 연구결과보고서 (재단의 소정양식)
 - 강의 결과보고서
- ※ 국문 연구요약문은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

※ 위의 자료는 온라인으로 제출

(3)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

당초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‘연구결과보고서’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비를 환수하고 향후 5년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(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포함) 지원에 대하여 연구비 신청을 제한함

※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(표절행위 등)로 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재단 관리지침 및 협약에 의거한 제재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함

다. 최종연구결과물(게재 논문 또는 저서) 발표

(1) 연구결과물 발표에 대한 책무

최종연구결과물은 국내·외 전문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

(2) 최종연구결과물 제출시기 :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

※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치 아니함

(3) 최종연구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할 경우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함

- 국문표기 : “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.
(KRF-2004-043-○○○○○○○)”
- 영문표기 : “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.
(KRF-2004-043-○○○○○○○)”

※ 재단이 아닌 다른 연구비 지원기관의 일부 보조표기 또는 병기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

라. 최종 연구결과물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

○ 최종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국내·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아니하였거나 학술저서로 출판하지 아니한 경우 미게재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

- 미 게재 사유가 합당하지 않을 시는 D급과 동일 적용함
- 미 게재 사유가 합당할 시는 재단의 소정평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통과된 과제는 가능한 학술지 게재를 권장하고 C급, D급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연구비 (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 포함) 지원을 일정 기간(C급 3년, D급 5년) 제한함
- 당초 계획된 결과의 미도출로 논문게재가 불가능한 경우는 연구과정 및 결과를 제출받아 성실성과 적합성을 별도로 평가함

2. 연구결과 사후 관리

○ 연구결과논문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함

- 연구결과물의 원문정보서비스(Full-text service) 실시
- 연구현황, 통계 등의 제공
- 「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」과 「기술이전촉진법」에 의해 국공립 대학 소속 교수의 직무발명 관련 산업재산권은 ‘산학협력단’ 또는 ‘기술이전전담 조직’의 소유로 함
- 사립대학 소속 연구책임자가 참여한 연구과제에 의해 취득한 산업재산권도 소속대학의 산학협력단 또는 법인이 소유함
- 연구책임자 등 연구원에 대한 보상은 산학협력단 또는 학교법인의 내규에 따라 처리함
- 연구결과 논문 또는 저서 등에 관한 저작권은 소속기관 산학협력단 또는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연구실적물 심사 결과 표절로 판명되어 징계조치를 요구받거나 징계를 당한 경우 5년간 연구비 신청자격 박탈

3. 연구성과 Follow-up 시스템

-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후에라도 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물(논문, 저서, 보고서, 특허, 기술, 발명, 세계인명사전 등재, 언론보도, 인력양성 실적 등)을 게재하여야 함

VII. 간접연구비 지원

지원대상 사업이 아님

VIII. 행정사항

- 온라인 신청시 심사 학문분야는 재단 홈페이지 『연구분야분류표』를 참고하여 심사희망 분야명을 정확하게 선택하기 바람
- 신청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자료를 입력할 경우 신청 및 지원을 취소할 예정이므로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

문 의 처

(137-17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

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기반조성 1팀

TEL (02)3460-5606, FAX (02)3460-5620

<양식 1>

강의 · 연구계획 추천서

(학과장 추천서)

강좌명	2004년 2학기 강좌명 : 2005년 1학기 강좌명 :					
강의내용	강의기관	대학(교)			학과 (학과장 :)	
		전화 : ()			FAX : ()	
	강의학점		주당 강의시간		강의과목 구분	전공필수(), 전공선택(), 교양()
연구과제명						
신청자	성명	한글: (영문:)			주민등록번호	-
					전화	()
상기 신청자는 해당 보호학문분야에 있어서 연구의욕이 왕성하고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한 열의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귀 재단의 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사업 적격자로 추천하며, 상기 연구자가 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에 선정될 경우 1년간 해당 강의를 배정할 것을 확인합니다. 2004. . . 대학(교) 학과 학과장 성명 : (인)						

※ 추천인은 신청자가 강의와 연구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만 추천해야 함 (정규직 취업자 제외)

<양식 2>

미 취 업 확 인 서

신청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-
	소속기관명			
신청자 연락처	자택주소 : 전화번호 :			
	휴대폰 : Fax : E-mail :			
내용				
	위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 신청인 (인)			

<양식 3>

2004년도 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사업 각종 보험 가입(미가입) 확인서

강좌명	2004년 2학기 강좌명 : 2005년 1학기 강좌명 :			
연구과제명				
신청자	성명	한글: (영문:)	주민등록번호	-
			전화	()
1. 우리 기관에서는 위의 연구자가 2004년 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 각종 보험에 가입할 것을 확인합니다. () 2. 우리 기관에서는 위의 연구자가 2004년 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 각종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. () 2004. . . 기관명 : 기관장 : (인)				

- ※ 1. 상기 확인서의 해당란에 ○표 해주시기 바랍니다.
2. 위의 확인서는 연구비 지원업무 담당부서로 제출해야하며, 각종 보험에 가입하는 기관에만 기관지원비(200만원)를 지급할 예정임
3. 가입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추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관지원비(200만원)를 반납하여야 함

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

강의 · 연구계획서

(사업명 : 보호학문 시간강사 지원 사업)

강좌명	2004년도 2학기 강좌명 :					
	2005년도 1학기 강좌명(예정 : 가변적) :					
강의내용	강의학점		주당 강의시간		강의과목 구분	전공필수(),전공선택(), 교양()
연구과제명						
우선순위	1순위		2순위		3순위	
심사회망						
분야명						
code명						

※ 심사희망분야명과 Code명은 재단 홈페이지 (<http://www.krf.or.kr>) 첫 화면의 “연구분야분류표”상 분야명과 학문코드를 참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※ 2005년 1학기 강좌배정은 강좌명이 변경가능하나 중간보고서 제출시 개설확정 되어야 함

I. 주요학력 및 경력사항

1. 최종 학위논문

논문제목	
학 위 구 분	석사 (), 박사 (), 기타()

*기타란은 “특이한 기술”, “과정수료” 등의 사실을 기입 하십시오

● 주요학력 및 경력사항은 재단 학술연구자 정보DB를 이용할 예정이니 반드시 본인이 입력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

II. 연구 및 강의실적

1. 연구실적

● 연구실적에 해당되는 사항은 재단의 학술연구자 정보DB를 이용할 예정이니 온라인 신청 마감일 전에 반드시 본인이 입력 ·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

2. 강의실적

강좌명	강의기관	기간	학점	주당 강의시간	수강 인원	과목 구분	비고

※ 과목구분은 전공필수·전공선택·교양중 택일하여 기재

III. 강의 내용 계획

● 강좌명 :

- 1) 강좌개설의 목적
(보호학문으로서의 필요성)
- 2) 강좌 관련 분야의 국내외 동향
- 3) 강좌 내용 및 방법
- 4) 기대효과 및 향후 활용 계획

IV. 연구계획개요

● 연구과제명 :

1) 연구목적 (필요성)

2) 연구내용, 범위 및 방법

3) 학문·사회발전에 대한 기여 및 활용도

4) 참고문헌

(중요 선행연구의 검토, 인용 및 참고문헌의 적정성)

※ 각 항목별로 작성하십시오.